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726 발의연월일: 2025. 1. 22.

발 의 자:이병진・김영호・민병덕

이재관 • 박용갑 • 윤후덕

이상식 · 송재봉 · 소병훈

김현정 · 김문수 · 임미애

주철현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항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로 하여금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되, 원유, 제철원료, 액화가스 등(이하 "대량화 물"이라 함) 화주나 대량화물의 화주가 사실상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법인이 그 대량화물을 운송하기 위하여 외항화물운송사업 등록을 신 청한 경우에는 국내 해운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등록 여 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화주에 의한 자가화물 운송을 규제함으로써 화주가 본업에 집 중할 수 있도록 하여 본업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는 한편, 제3자물류 유도·촉진을 통하여 운송업 발전을 도모하려는 취지임.

이와 관련, 경제력 집중으로 인한 독과점 폐해 등 국가경제 질서 저해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법률 취지를 고려할 때 현행 외항화물운송 사업 등록 제한 대상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므로, 그 대상을 대량 화물의 화주가 사실상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법인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변경하려는 것임.

한편, 최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친환경 연료 개발 및 사용이 활발해짐에 따라 친환경 연료 운송 수요 또한 증가하고 있는데, 현행법은이러한 현실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친환경 에너지원인 암모니아, 에탄올, 에틸렌을 대량화물에 추가함으로써, 법률 취지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규제 공백을 해소하여 건전한 해운산업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7항 및 제8항).

법률 제 호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7항 중 "액화가스"를 "액화가스, 암모니아, 에탄올, 에틸렌"으로, "화주(貨主)나 대량화물의 화주가 사실상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법인이"를 "화주(貨主)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대량화물의 화주가 사실상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법인에 대한 기준, 정책자문위원회"를 "정책자문위원회"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4조(사업의 등록) ① ~ ⑥	제24조(사업의 등록) ① ~ ⑥
(생 략)	(현행과 같음)
⑦ 원유, 제철원료, <u>액화가스</u> ,	⑦ <u>액화가스,</u>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암모니아, 에탄올, 에틸렌
주요 화물(이하 "대량화물"이라	
한다)의 <u>화주(貨主)나 대량화물</u>	<u>ঐ</u>
의 화주가 사실상 소유하거나	주(貨主)나 「독점규제 및 공정
지배하는 법인이 그 대량화물	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
을 운송하기 위하여 해상화물	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
운송사업의 등록을 신청한 경	<u>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u>
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도 불구하고 미리 국내 해운산	
업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하여	
관련 업계, 학계, 해운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정책자문위원회	
의 의견을 들어 등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⑧ 제7항에 따른 <u>대량화물의</u>	⑧ <u>정책자문위</u>
화주가 사실상 소유하거나 지	원회
배하는 법인에 대한 기준, 정책	
<u>자문위원회</u> 의 구성·운영에 관	

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